

대구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1나3026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11. 25.

판 결 선 고 2021. 12. 23.

제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 12. 선고 2020가단635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서구 B 대 4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9. 20.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원고는 전소인 이 사건 패소판결에서 이 사건 소송물을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패소판결에서는 이 사건 소송물에 관하여 판단하였으므로(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부계약¹⁾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체납 대부료 및 연체료에 관해 정산을 요청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권리가 지상권임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의사가 있다는 표시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그에 터잡아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라고 판단하였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 또는 관계 관청의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한다면, 이 사건 소가 아닌 별도의 방법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낙형, 판사 정석원, 판사 진세리

1) 원고는 대부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